

| | | | |
|---|--|--|--|
|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 | |
| 보도 일시 2022. 10. 25.(화) 조간 2022. 10. 24.(월) 11:00 | 배포 일시 2022. 10. 24.(월) 06:00 | | |
|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 | |
| | 담당자 사무관 조영진 (044-200-5818) | | |

선박 안전관리선사 최고경영자 정책간담회 개최
- 해사안전분야 신규정책 및 탈탄소 분야 국제동향 공유 등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규제완화와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해사안전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국제해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선박 안전관리선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10월 25일(화)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사안전법」 상 선박 안전관리대행업자로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업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관리대행업 등의 창업규제를 완화하고,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개정('22.1)해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여객선과 위험화물운송선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안전투자비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해운 분야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24.1 시행)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의 실제 대상인 '선박 안전관리선사'에게 정책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안,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변경 등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해운분야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도입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국제해운 분야의 탈탄소 관련 기술개발 협력방안 등 해운분야 탈탄소화 국제동향과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개발 실증방안, 국제표준화 추진현황 등 우리나라의 탈탄소 전환 대응방안도 공유하면서 친환경 해운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참여도 촉구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도입하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안전중심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박안전관리선사 등 해운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참고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선박의 대형화·첨단화 등에 대비하고 선박 안전관리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22.1월 개정)
 - '선박안전관리사'의 수행업무*, 역량검증 방식(필기시험 등) 및 자격 시험 시행·운영 업무 위탁근거 등 마련**('24.1월 시행)
 - *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선박 안전관리 점검·지도, ▲해양사고 예방 지도·조언 등
 - ** 등급별 응시자격(1~3급),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예정(하위법령 개정, ~'22)

| 현행 | 개선 |
|---------------------------|--------------------------|
| · (경력기준) 해기사면허+근무(승선)경력 | · 선박안전관리 자격증(신설) 보유자 |
| · (교육기준) 안전관리체제 교육(최초 1회) | · 주기적 직무교육(2년)을 통한 자격 유지 |

□ 자격제도 도입 전후 비교

| 구분 | 제도 도입 전 | 제도 도입 후 |
|-------|--|--|
| 자격 검증 | ■ 검증체계 없음 | ■ 자격시험(필기 등) |
| 교육 | ■ 최초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시 12~16시간 교육수료(재교육 없음) * 국제협약, 심사기법, 선박운항 지식 등 | ■ 주기적(매 2년)으로 재교육 시행 |
| 선임 절차 | ■ 해기사로 승무* → 교육수료** * (내항) 4급 해기사로 2년 (외항) 2급 해기사로 3년 등 ** (내항) 12~14시간 / (외항) 14~16시간 | ■ 안전관리자 - 2급(외항) 또는 3급(내항)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 안전관리책임자 - 1급(외항) 또는 2급(내항)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

⇒ 자격제도 신설, 재교육 의무화 등 자격 검증·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해사분야 안전관리 인재양성 및 전문성 강화

참고2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개요

□ 배경 및 경과

- (배경) 안전활동에 대한 선사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확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경과) 연구용역('21.4~'22.1)을 통해 도입 타당성 검토, 구체적 제도 시행방안·법령(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 * 업·단체 이해증진,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목적(4.27/서울, 5.3/대전, 5.13/부산)

□ 주요 내용

- (공시대상)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 및 대형사고(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송선박 등 취약분야* 대상 우선 도입**·시행
 - * 정기기업공시 대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위험화물운송사업자
 - ** 공시항목(안):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투자비용
- (추진방안) 타 분야 사례 등을 참고해 2년간 제도 시행 유예기간 확보* 및 제도성과 분석 등을 통해 적용대상 순차적 확대 추진
 - * 「해사안전법」 전부개정(「해사안전기본법」)을 통해 도입 근거 및 업계의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유예기간(2년) 중 시범사업 추진 근거(부칙) 마련
- (기대효과) 안전중심 경영문화 정착,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선사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노후설비 교체 유도 등을 통한 사고 저감
 - * 타 교통분야 사례: 철도분야 시행 결과('18→'20), 안전투자 82%(1.41→2.57조원) 증가, 사고율 42%(98→57건) 및 사망률 50%(44→22명) 감소 확인

□ 향후 계획

- 「해사안전법」 개정*('22.6~), 시범사업('23~'25) 및 제도 시행('26~)
 - * 「해사안전법」 분법에 포함, 법제화(「해사안전기본법」에 근거조항 신설) 추진